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3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김원이·서영교·인재근

박 정・박홍근・서삼석

송옥주 • 신정훈 • 진성준

김철민 · 문진석 · 소병철

양이원영 · 윤재갑 · 윤준병

이장섭 · 이형석 · 임호선

조오섭 · 최종윤 · 황운하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,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, 발굴 등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음.

그러나,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.

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

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제2항 전단 중 "제46조제3호"를 "제46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 2항"으로 한다.

제74조제3항 전단 중 "제46조제3호"를 "제46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 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손실의 보상) (생 략)	제46조(손실의 보상) ① (현행 제
	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
	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
	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
제59조(준용 규정) ① (생 략)	제59조(준용 규정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	②
의 원칙,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	
체에 의한 관리, 국가등록문화	
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	
금지,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	
기록의 작성과 보존, 정기조사,	
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	
현상 등의 조사, 정기조사로 인	
한 손실의 보상, 국가등록문화	
재의 관람료 징수, 국가에 의한	
보조금의 지원, 지방자치단체의	
경비 부담, 소유자 변경 시 권	
리・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	
제33조,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	
까지, 제37조, 제39조, 제43조부	

터 제45조까지, <u>제46조제3호</u>, 제49조, 제51조제1항제1호·제3 호 및 제2항·제3항,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지정문화재"는 "국가등록 문화재"로, "관리단체"는 "국가 등록문화재관리단체"로 본다.

제74조(준용규정) ① ~ ② (생략)

③ 시 ·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.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, 제37조, 제43조부터 제45 조까지, 제46조제3호, 제49조,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 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문화 재청장"은 각각 "시·도지사" 로, "대통령령" 또는 "문화체육 관광부령"은 각각 "시·도조 례"로, "국가"는 각각 "지방자 치단체"로, "국가지정문화재" 또는 "국가등록문화재"는 각각 "시·도등록문화재"로, "국가등 록문화재관리단체"는 각각 "시 •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"로,

<u>제46조제1항제3호,</u>
같은 조 제2항
<u>.</u>
제74조(준용규정) ① ~ ② (현행
과 같음)
③
제46조제1항제3호, 같
은 조 제2항
·

"문화재위원회"는 각각 "시·	
도문화재위원회"로 본다.	
	<u>.</u>